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성명 : 윤화중

주소 : 부천시 오정구 내동 80

나. 소개의원 : 박노설 의원

다. 접수일자 : 1998년 11월 21일

라. 회부일자 : 1998년 12월 8일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가스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98. 9. 11 발생한 내동가스폭발사고의 충격으로 연립주택이 균열 보상요구

○ 주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이주대책 요구

3. 취지설명요지

(취지설명 : 박노설 의원)

○ 내동 대성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지붕과 벽에 균열이 생겨 비가 새고 또한 인근에 대원냉동 암모니아 탱크시설이 있는 등 주위환경이 열악하여 주거 환경지로서 불편한 점이 많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건축물에 대하여 98. 9. 24 경기도 안전점검 기동반의 구조안전검사 결과 본 건축물은 금번 가스폭발사고와 무관하다고 하나 청원인의 주장은 상이함

○ 주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이주대책 요망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가스폭발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은 하였는가?</p> <p>○ 주변에 있는 대원냉동의 암모니아 탱크시설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가?</p> <p>○ 주위의 열악한 환경으로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주대책은 없는가?</p>	<p>○ 98. 9. 24 경기도 안전점검 기동반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가스폭발의 충격에 의한 균열을 발견치 못함.</p> <p>○ 위험성은 없으며,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음.</p> <p>○ 시에서 연립주택을 매입하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적극 추진하고 상동지구 임대APT를 알선하도록 하겠음.</p>

6.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첨부 : 가스폭발사고 피해연립주택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의견서 1부

가스폭발사고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관한청원의견서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1998. 12. 11

안전명	가스폭발피해연립주택이주대책에 관한청원
소개의원	박노철 의원

부천시 오정구 내동 80, 80-2번지에 소재한 연립주택은 1977년 준공되어 1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건축물로서 금번 가스폭발사고의 충격으로 옥상과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주변이 공장 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대원냉동 암모니아 탱크시설이 인접하여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음.

본 연립주택을 시에서 매입하고 타지역으로 이주시켜 주둔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부천시에서는 적의 판단하여 조속히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을 촉구함.

1998. 12. 11

부천시의회 가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